

#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412
------	------

2025. 3.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김형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2.2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형재 의원)

### 1. 제안이유

- 오늘날 전통사찰들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및 힐링명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역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신설(안 제7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와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 관내의 전통사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발의되었음.

### (2) 개정의 필요성

-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존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60개<sup>1)</sup>이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sup>2)</sup>와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sup>3)</sup>를 지원받고 있음.

따라서 현재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와 관계된 지원사업은 노후화 보수와 재난을 대비하는 방재시설 위주로만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일반적인 안전시설의 설치는 계단, 이동로 등을 구비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최근 5년(2020-2024년) 간의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의 안전 위해요소 점검 횟수는 총 52회에 불과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안된 전통사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해 보임.

**< 2020-2024년도 자치구별 전통사찰 소재 및 안전 위해요소 점검 현황 >**

자치구 명	소재 개수	점검 횟수	자치구 명	소재 개수	점검 횟수	자치구 명	소재 개수	점검 횟수
강 남 구	2	2	도 봉 구	3	2	양 천 구	0	-
강 동 구	0	-	동대문구	2	0	영등포구	0	-
강 북 구	7	0	동 작 구	3	0	용 산 구	0	-
강 서 구	3	12	마 포 구	0	-	은 평 구	5	12
관 악 구	4	1	서대문구	2	0	종 로 구	12	0
광 진 구	1	2	서 초 구	1	0	중 구	0	-
구 로 구	0	-	성 동 구	1	0	중 랑 구	0	-
금 천 구	1	15	성 북 구	9	0	합 계	60	52
노 원 구	4	6	송 파 구	0	-			

1) 2025년 1월 기준

2) 전통사찰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 보수 지원

3) 전통사찰의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

### (3) 안전사고 예방 지원(안 제7조제4호 및 제5호)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 조사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의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sup>4)</sup>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sup>5)</sup>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치사무의 범위이므로 규정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에 난간, 미끄럼방지 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면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적으로 보행 편의 증진에 따른 방문 횟수 증가도 기대되는 바임.

#### < 개정안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u>&lt;신설&gt;</u>  <u>&lt;신설&gt;</u>  4. (생략) ② (생략)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u> <u>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u>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사·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5)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영한, 서상열,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 1. 제안이유

- 오늘날 전통사찰들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및 힐링명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역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신설(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p> <p>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p> <p>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u></p> <p>5. <u>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u></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항	제4호	△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의결과 범위 및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제5호	△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관련 정보 또한 적어 추계가 곤란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제1항제4호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의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실태조사<sup>1)</sup> 실시 비용을 추정하려면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활동경비<sup>2)</sup>, 일반관리비(간접비)에 등을 파악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제1항제5호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의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추정하려면 안전사고의 유형(Ex. 낙상, 끼임, 가시절립 외상사고 등)을 분류하고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한편 그에 대응할 만한 예방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 특히 사고유형별, 발생빈도, 발생장소 등에 따라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므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함

1) [조사기간 변수 존재] 통상 실태조사는 6개월 내외이나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고, 향후 전통사찰의 문화재적 특성 등에 따라 조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2) 특히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 전수조사(현재 60개소)를 실시할 경우 각 사찰을 1회이상 현장방문하여 조사하여도 60번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향후 실태조사에 대한 적정규모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임  
 ※ 연구활동경비로는 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이 소요될 수 있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